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명시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68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명시	2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1.

3. 회부연월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Ⅲ. 검토의견

1.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보육료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 ‘보육료 등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의 보육료에서는 급식·간식비를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급식·간식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치원과 같이 어린이집에 보육료와 별도로 급식·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u>	8. <u>보육료(급식·간식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외의 필요경비(급식·간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u>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 제34조에서는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보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¹⁾

구체적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통교부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되, 법률 제1439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9호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영유아보육료(0세~2세)’를 부모보육료(바우처) 및 기관보육료(보조금)로 지원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로 지원하고 있음. < 참고자료1: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요 >

[2026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부모보육료	584	515	426	634
기관보육료	693	377	256	742
계	1,277	892	682	1,376

- * 주: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 ※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보육시 지원 ※ 1일 이상 출석시 전액 지원
*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0	280	280
방과후과정비	50	70	70
계	150	350	350

- * 자료: 교육부

그런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이상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유치원 유아학비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음.

- 현재 만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①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나, ②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내에서 급·간식비를 집행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방식의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다만, 어린이집의 3~5세 유아와 같이 0~2세 영아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에 급·간식 재료비가 반영되어 있어 0~2세 보육료에 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함.²⁾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의 비교³⁾]

구분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
목적	무상보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무상교육(누리과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용 산정
주체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산출 기준 (시행규칙)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1. 공통과정 운영에 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 공통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공통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 자료: 교육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 재구성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3) 무상교육·보육에 필요한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의 산정을 위한 근거로 현행법은 각각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를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누리과정을 위한 지원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보육료에 급·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간식비를 분리하되, 급·간식비를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지원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도 별도로 급·간식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경감된 급·간식비만큼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 있어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게 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34조는 무상보육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체계적으로 개정안 제25조제4항제8호와 같이 보육료와 급식·간식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간식비 지급의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현행법 제25조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위

원회의 설치 목적,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음.⁴⁾

-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8조⁵⁾를 통해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
호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①보호자에 대한 보육료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의 설명 의무, ②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통한 필요경비 수납액
의 결정 및 ③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받는 경우 지원액 환수, 시정·변경명령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을 통해 보육료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의무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음.⁶⁾

4) 「영유아보육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 7. (생략)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받을 때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6)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아울러 ‘필요경비’⁷⁾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영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경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급식·간식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간식비 지원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 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할 ‘필요경비’에 대하여 지역별 여건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외 별도로 급·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 체계적으로 개정안 제25조제4항제8호와 같이 보육료와 급식·간식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더라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지원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 94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 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참고로, 교육부는 보육사업안내⁸⁾에 따라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고,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음.

[2026년도 시·도별 급·간식비 추가지원 현황]

(단위: 원)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일단가	월단가	일단가	월단가
서울	262	5,240	1,034	20,680
부산	600	12,000	1,160	23,200
대구	350	7,000	350	7,000
인천	500	10,000	720	14,400
광주	930	18,600	930	18,600
대전	880	17,600	1,180	23,600
울산	400	8,000	400	8,000
세종	600	12,000	600	12,000
경기	370	7,400	3,520	70,400
강원	도비 지원 사업 없음,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			
충북	2,000	40,000	3,000	60,000
충남	600	12,000	600	12,000
전북	700	14,000	1,240	24,800
전남	도비 지원 사업 없음		누리과정 3~4세 1인당 800원 250일 지원	
경북	650	13,000	650	13,000
경남	도비 지원 사업 없음,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중			
제주	500	10,000	500	10,000

* 주: 월 20일 지원 기준으로 환산

* 자료: 교육부

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 p. 92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 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 급·간식 재료비의 경우 시도교육청(지청)의 별도 지원이 있을 경우 별도 재원을 우선 활용 (예시) 유아 1인당 급·간식 재료비를 일 3,400원 편성하고 시도교육청 등에서 일 2,900원 지원 시, 보육료에서는 500원만 편성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기본보육(표준보육과정) 내 급·간식비를 실비 성격인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법상 무상보육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균등한 지원이라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 기관 간 비용지원구조 등이 달라 구조 개편 관련 연구·논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순히 급·간식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 1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요 (자료: 교육부)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 ('26년 지원규모) 510천명, 3조 6,635억원 / 국비보조율 70.1%
- (지원방식)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부모보육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

- 부모의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문, 인터넷, 모바일, ARS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지원

(기관보육료)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0~2세, 장애아 보육 시 지원(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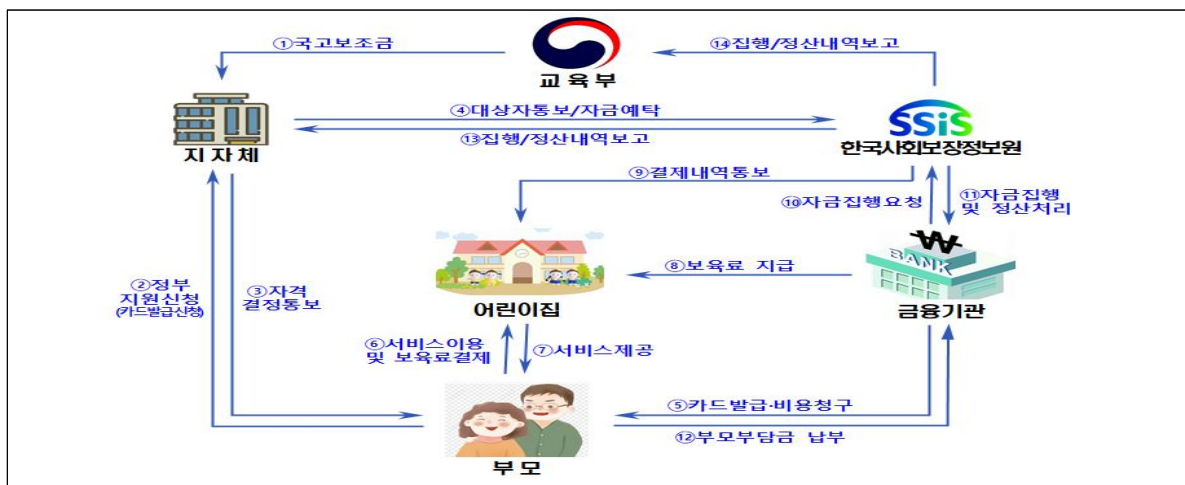
< '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월 기준, 단위:천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계	1,277	892	682	1,376
부모보육료	584	515	426	634
기관보육료	693	377	256	742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집행절차 >



2.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추진배경)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 누리과정 : 3~5세 대상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 (지원 대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3세 이상 유아를 둔 학부모
- (지원 항목) 유아교육비(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보육료
- (재원 부담) 「영유아특별회계법」 제3조에 의하여 교육세(유치원)와 국고(어린이집)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원
- (지원 단가) 보호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취학기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단가를 정하여 지원

< '26년도 유아학비(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단가(월) >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10만원	28만원	28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7만원	7만원
계	15만원	35만원	35만원

자료: 교육부